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목 차

1 논의배경

2 적용대상의 확대 · 구체화

3 공시기준의 일원 · 계층화

4 공시시기의 명확화

5 제3자 인증 의무화

6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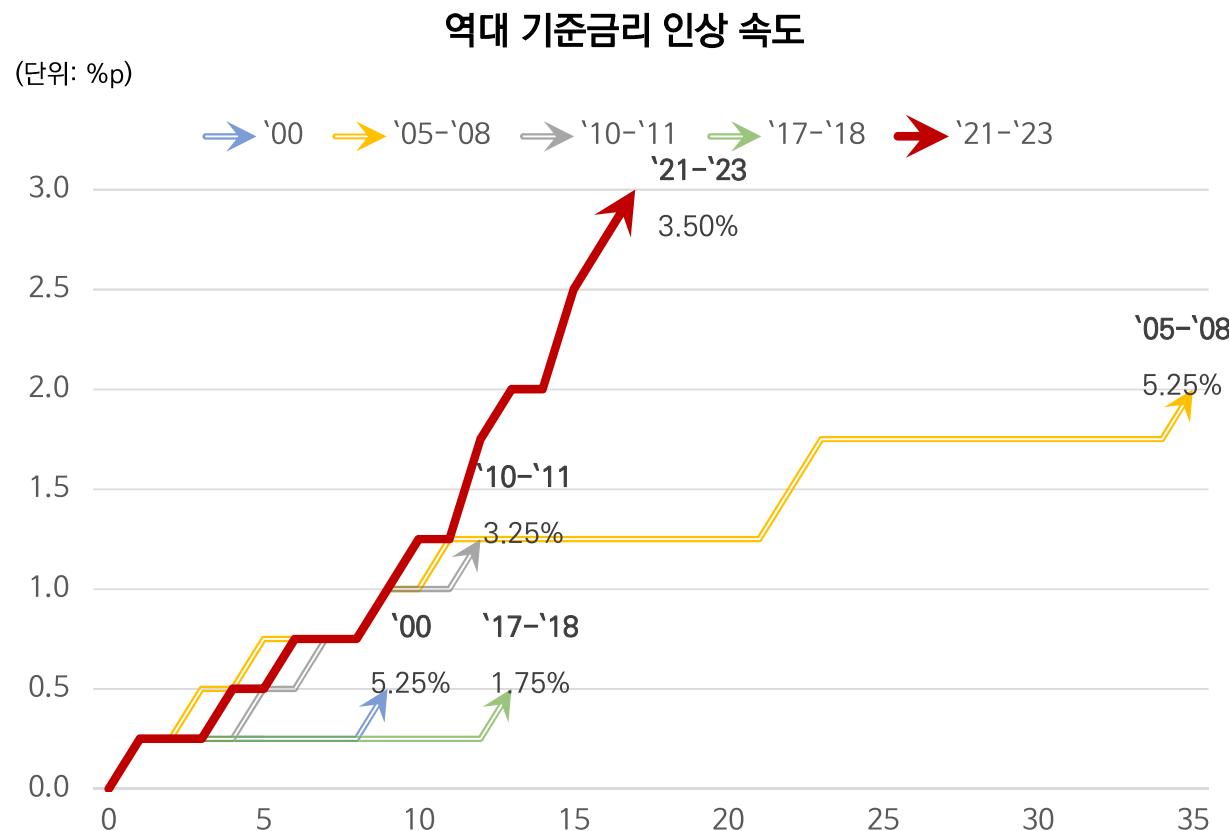
1

논의배경

기준금리 인상 추세

○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추세

› ('20.5.) 0.50% → ('21.8.) 0.75% → ('23.1) 3.50%



주 : 최초 금리 인상을 단행한 시점(0) 이후 누적 금리 인상분(%p) 및 기간(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구조 변화와 ESG 정보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한 경제구조 변화
(Nagel, 2022; 강현주,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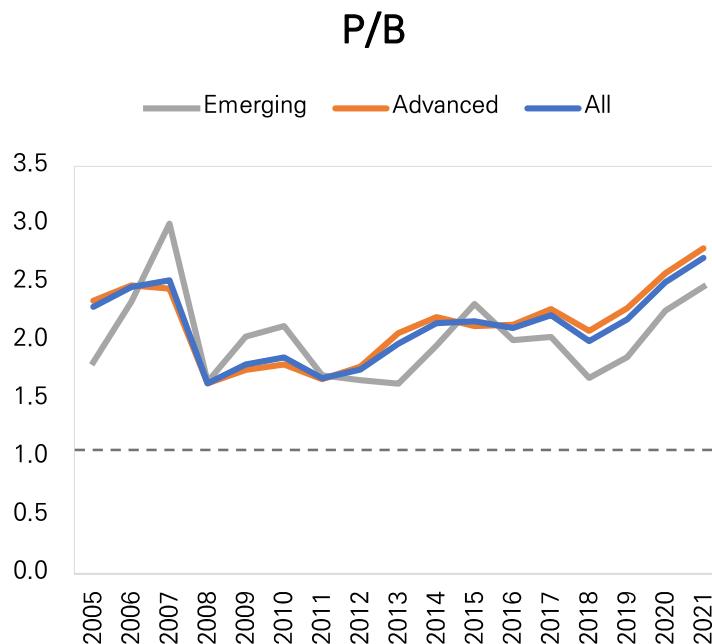
-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 › 탈탄소화(De-carbonization)
- ›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s)

- 시장 체제(regime)의 변화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ESG 정보 수요 증대와 연계
(Welch & Yoon, 2022)

- › 경제의 블록화 및 공급사슬 차원의 무역 질서 재편
- ›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조
-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관여 정책 확대 등

전통적 재무보고 방식의 한계와 보완 요구

- 전통적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창출 역량 정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님
 - › 시장가치(P)와 장부가치(B) 간 차이('21말 글로벌 증시 P/B: 2.7)의 상당 부분은 ESG 요소에 기인할 가능성
 - 환경, 사회, 인적·무형 자본, 지배구조 등
- ESG 정보 공시의 목표는 기업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 ([SASB, 2017](#))



자료: 김준석 (2022)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탈세계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와 기업 지속가능성

우리나라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규제 및 공시의무 동시 확대

- › 기후변화 대응,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가속화로 ESG 요소 전반의 위험관리가 필요
 - EU 탄소국경 조정제 및 공급망 실사 지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ESG 규율 강화는 국내 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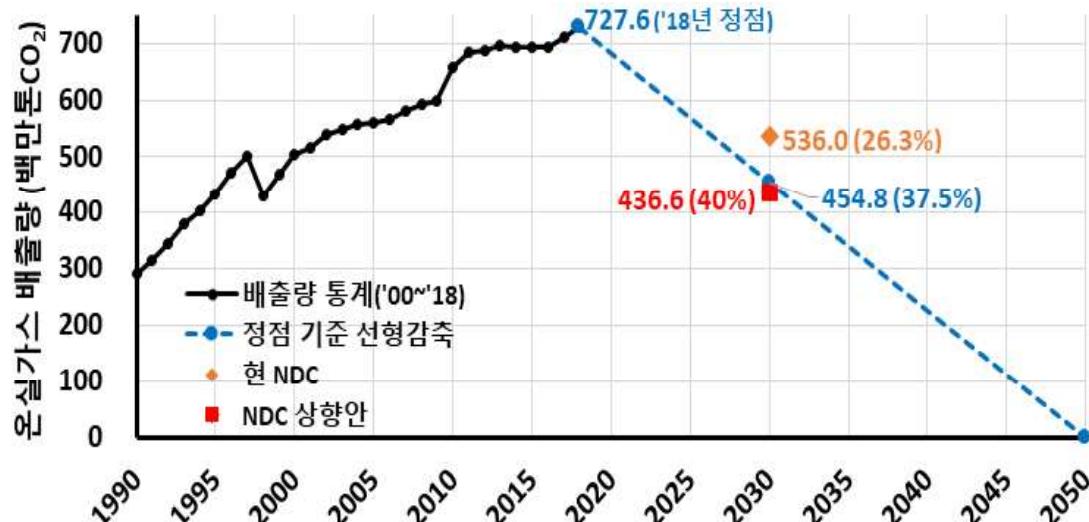
	규율 내용	국내 영향
EU CSRD	규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비상장 기업 ('25~, 단계적 적용)■ 對EU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 또는 EU에 일정 규모 이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非EU 기업('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EU 상장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의 EU 해외 법인■ [직접] EU에 수출하거나 EU에 종속기업·지점을 둔 국내 기업
	가치사슬내 활동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사슬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노동자 현황 등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안)	규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기업('24~, 단계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美 상장 국내 기업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율 대상은 가치사슬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공시('25~, 단계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EU 공급망 실사지침 (안)	규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규모 이상 EU 상장·비상장 기업, 對EU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非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EU 상장 국내 기업, 국내 기업의 EU 해외 법인, EU에 수출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율 대상은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내용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 규율 대상 기업과 공급·협력 관계인 국내 기업

탈탄소화: 법제화된 감축의무와 기업 지속가능성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 연평균 4.17%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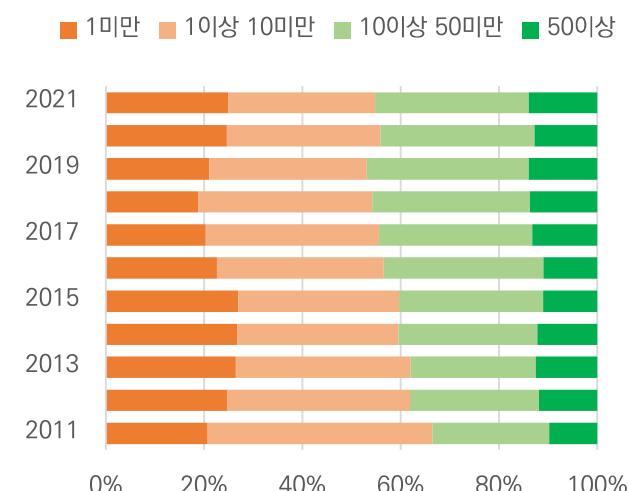
-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과거 배출정점('18)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안
- › 주요 선진국의 목표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유럽연합) 1.98%, (미국) 2.81%, (영국) 2.81%, (일본) 3.5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자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8

상장기업 탄소보상배율 구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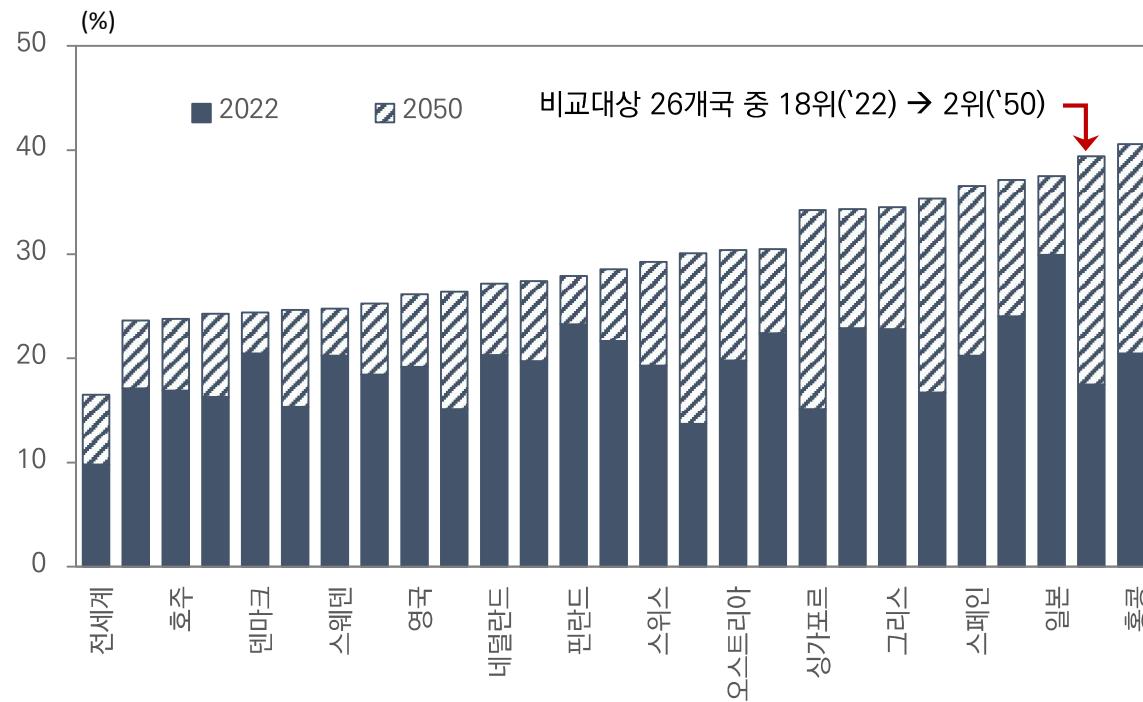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와 기업 지속가능성

○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비중이 예상되는 2050년

- › 65세 이상 인구: 17.5%('22) → 39.4%('50)
- › 80세 이상 인구: 4.3%('22) → 15.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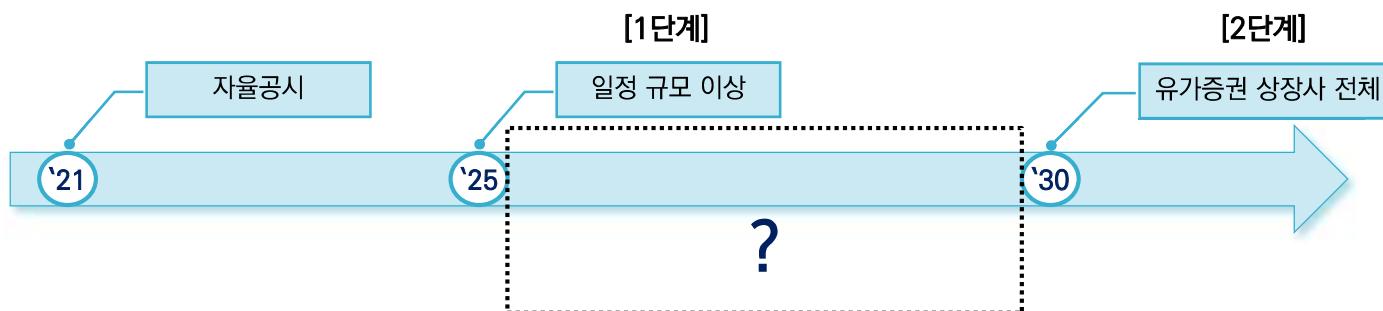


자료: 강현주 (2023)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도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 필요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경우 목표 설정('21.10) 이후 최근 들어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3.4)
 - › ESG공시 의무화 일정 목표('21.1) 역시 상당한 구체화가 필요
 - 구체적 대상기업, 공시기준, 공시시기, 제3자 인증 등 필수 제반요소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2단계 의무화 일정



ESG 공시제도 개편의 방향성

- 국제 정합성 · 이해관계자 수요를 고려한 기존 계획의 확대 · 구체화

- › EU · 美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제도, ISSB 기준과의 일관성
- ›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

-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제도 설계

- › 정책효과의 사후검증이 가능한 제도 설계를 통해 합리적 조정 여지를 확보

- 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행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고려

- › 특히,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 유발을 최소화

2

적용대상의 확대 · 구체화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 유가증권시장 상장 2조원 이상 기업의 66%는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비중

상장시장	자산 규모	전체 기업 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비중
유가증권	2조원 이상	190	126	66%
	1조원 이상	100	16	16%
	5000억원 이상	131	16	12%
코스닥	5000억원 미만	305	4	1%
	5000억원 이상	146	13	9%
	5000억원 미만	1,266	7	1%
합산		2,138	182	9%

주 : '21 사업연도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이 3개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품질

- 대규모 기업일수록 상대적인 공시품질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 › ISSB 등 글로벌 기준을 충실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
 - 세부 주제별 공시율을 높이고 각 주제별 공시충실도 역시 제고할 필요 ([정준희 · 기도훈, 2022](#))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충실도

상장시장	자산 규모	분량 (면수)	중요성 분석 결과	화폐화 근거 정보	TCFD 시나리오 분석
유가증권	2조원 이상	103.3	98%	13%	60%
	1조원 이상	107.6	100%	0%	31%
	5000억원 이상	87.3	100%	6%	31%
	5000억원 미만	70.5	100%	0%	0%
코스닥	5000억원 이상	76.8	92%	0%	8%
	5000억원 미만	67.0	100%	0%	14%

주 : '21 사업연도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이 3개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개선: 의무화 일정의 세분화 및 법정 공시로의 전환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준을 순차적으로 확대 ·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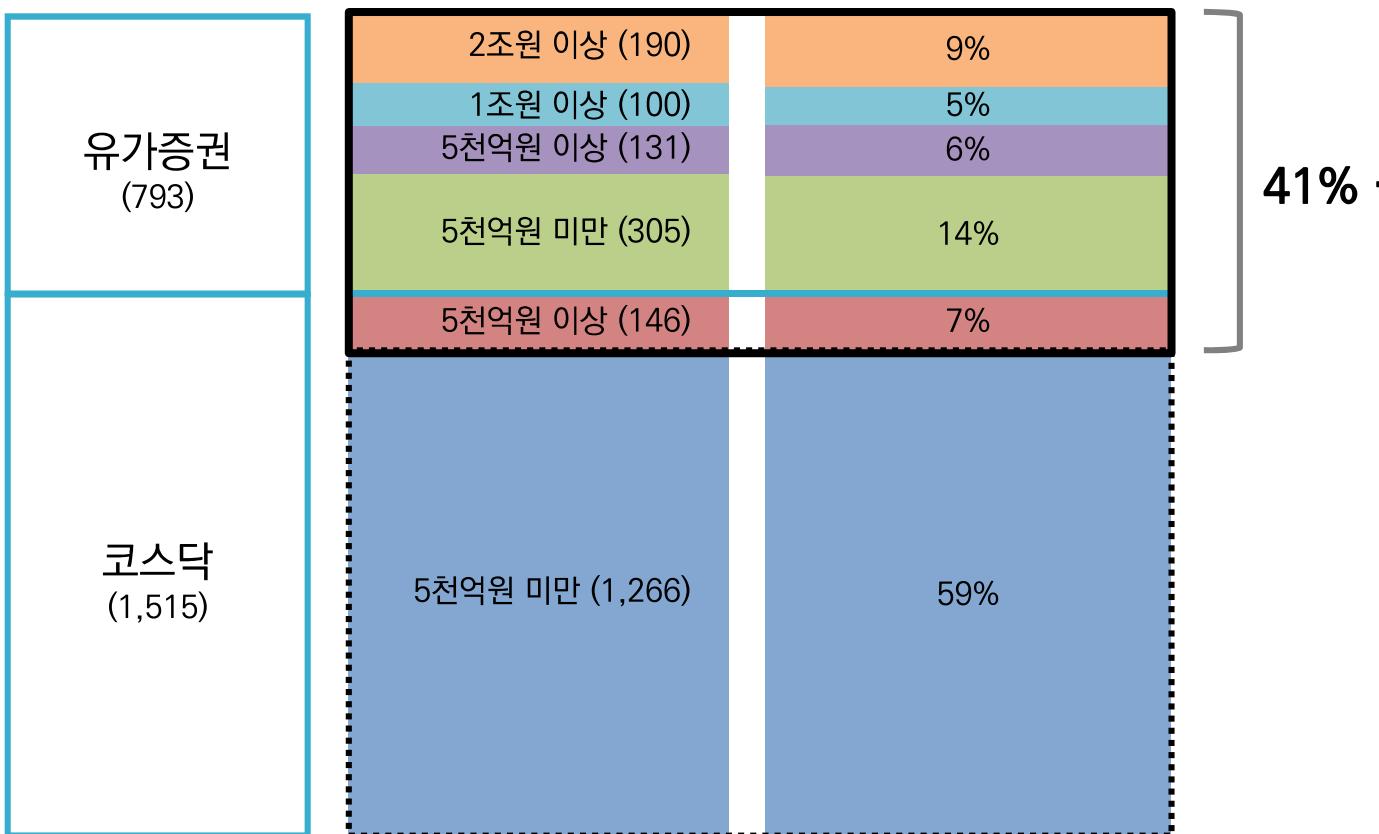
› (1단계) 거래소 공시 → 2년 후 → (2단계) 법정 공시

		(1단계) 거래소 공시				(2단계) 법정 공시				
적용대상	상장시장	자산 규모	'25	'26	'27	'28	'29	'30	'31	'32
	유가증권	2조원 이상	거래소		법정					
		1조원 이상		거래소		법정				
		5천억원 이상				거래소			법정	
	코스닥	5천억원 미만					거래소		법정	
		5천억원 이상				거래소			법정	
		5천억원 미만					자율			
공시기준		▪ KSSB 간소화 기준				▪ KSSB 일반 기준				
공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5개월 이내 (8/15)				▪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5개월 이내 (8/15)				
제3자 인증		▪ 제한적 인증 의무화				▪ 제한적 인증 의무화				

상장기업의 약 41% 공시 의무화

- 2030년 이후 약 41% 기업(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이 의무 공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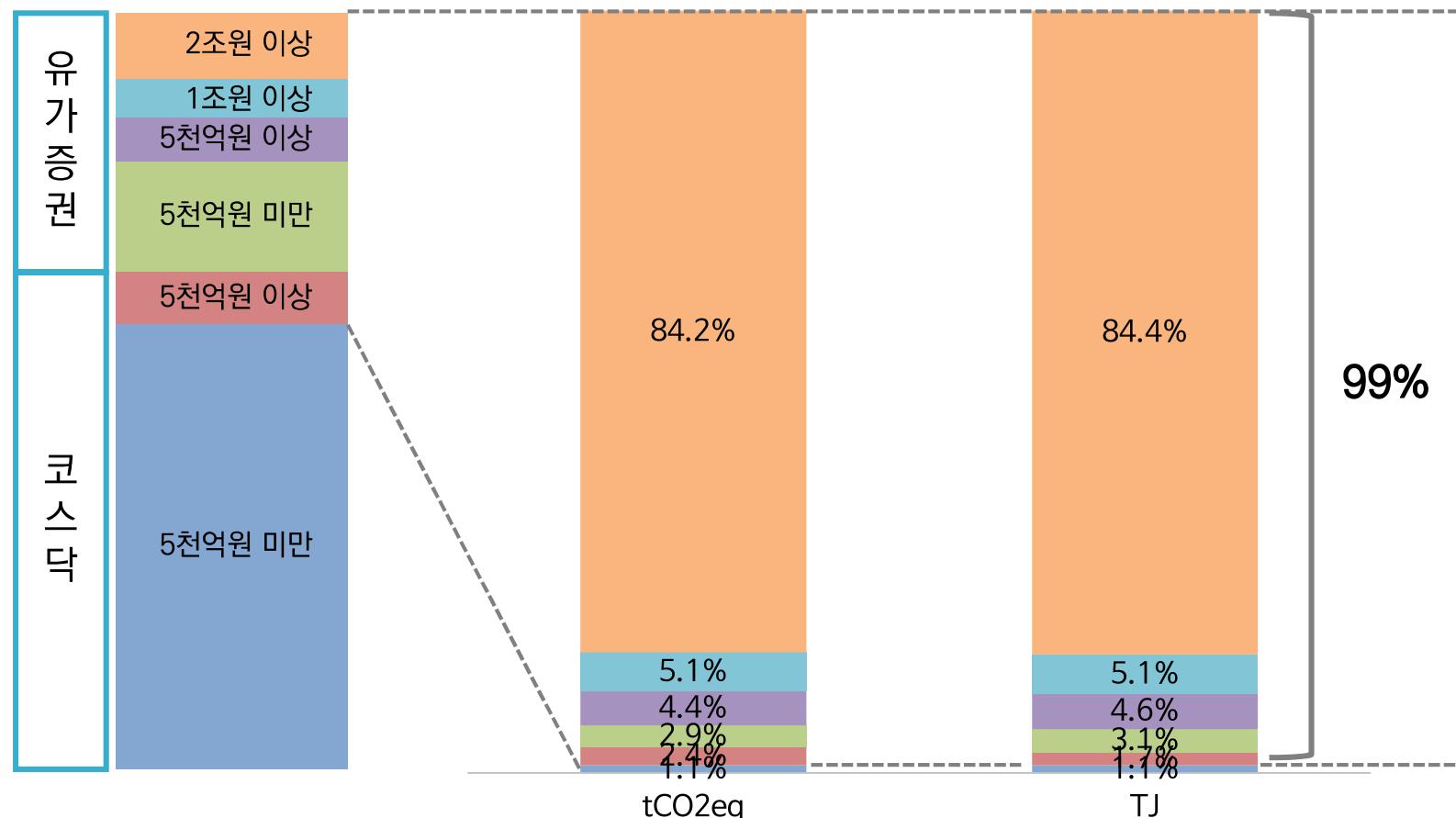
2021 사업연도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2,308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134)
결산월이 2, 3, 6, 7, 8, 9, 11월인 기업	(36)
합계	2,138



41% → 적절한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기준 99%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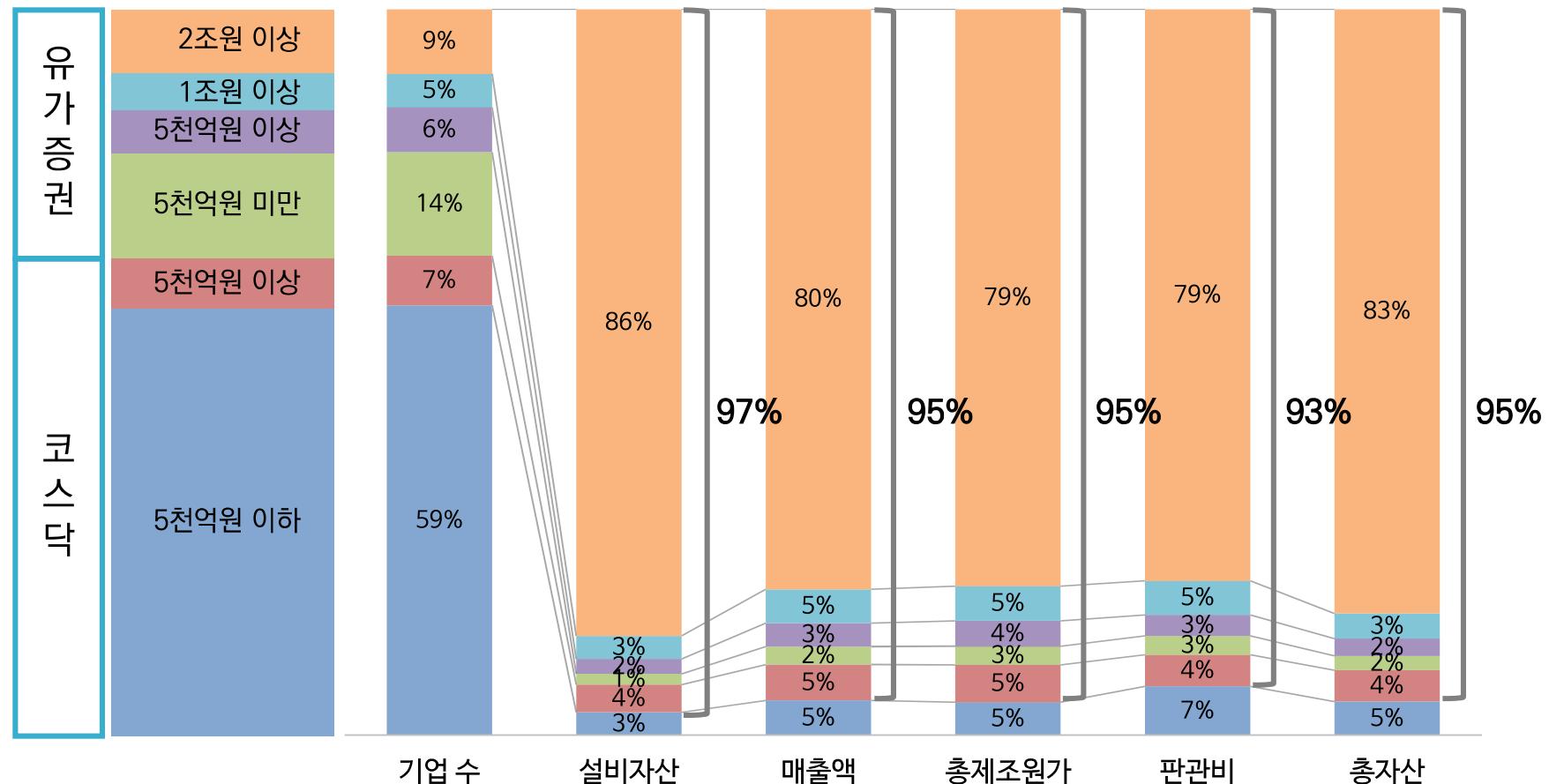
- 2030년 이후 유의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업 대부분을 의무 공시 대상으로 포함
 - '11~'2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상장기업 합산 기준 98.9% 범위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설비자산 규모 기준 약 97%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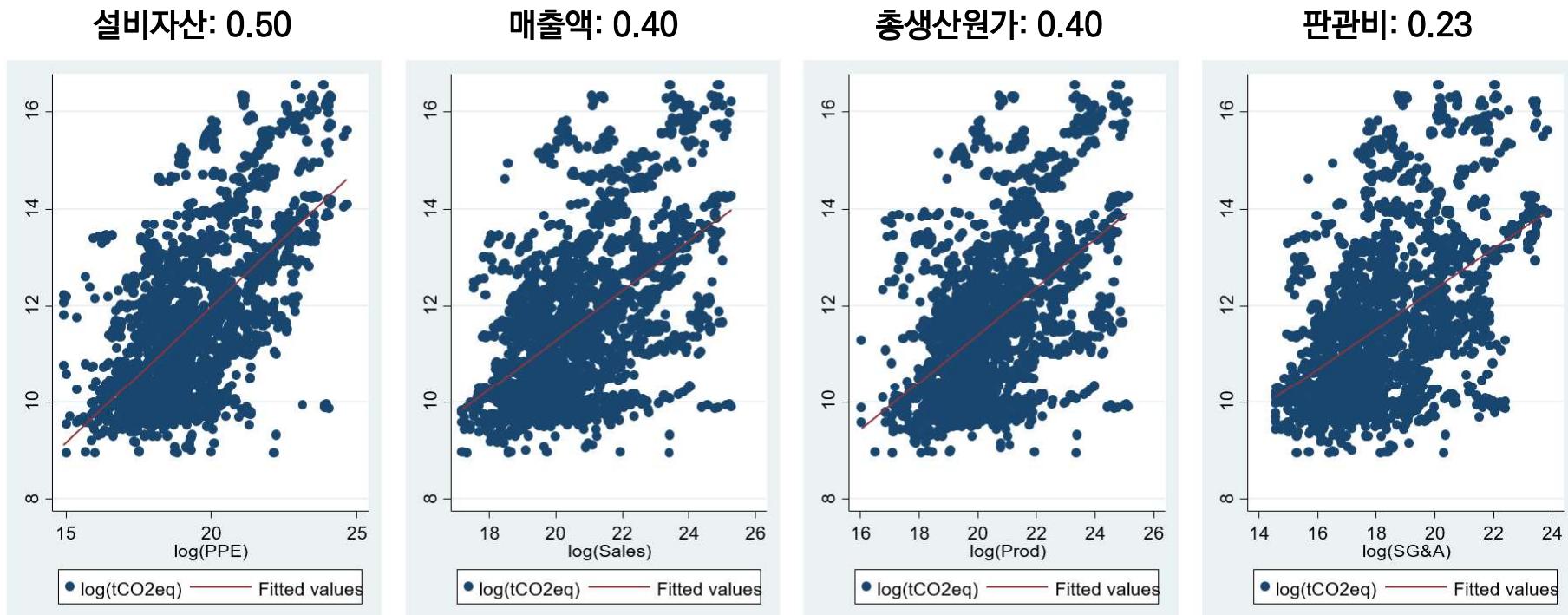
- 2030년 이후 설비자산 규모 및 생산 활동 수준의 93~97%가 의무 공시 대상
 - 설비자산 규모 및 생산 활동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밀접한 관련



자료: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설비 규모 · 생산활동 수준과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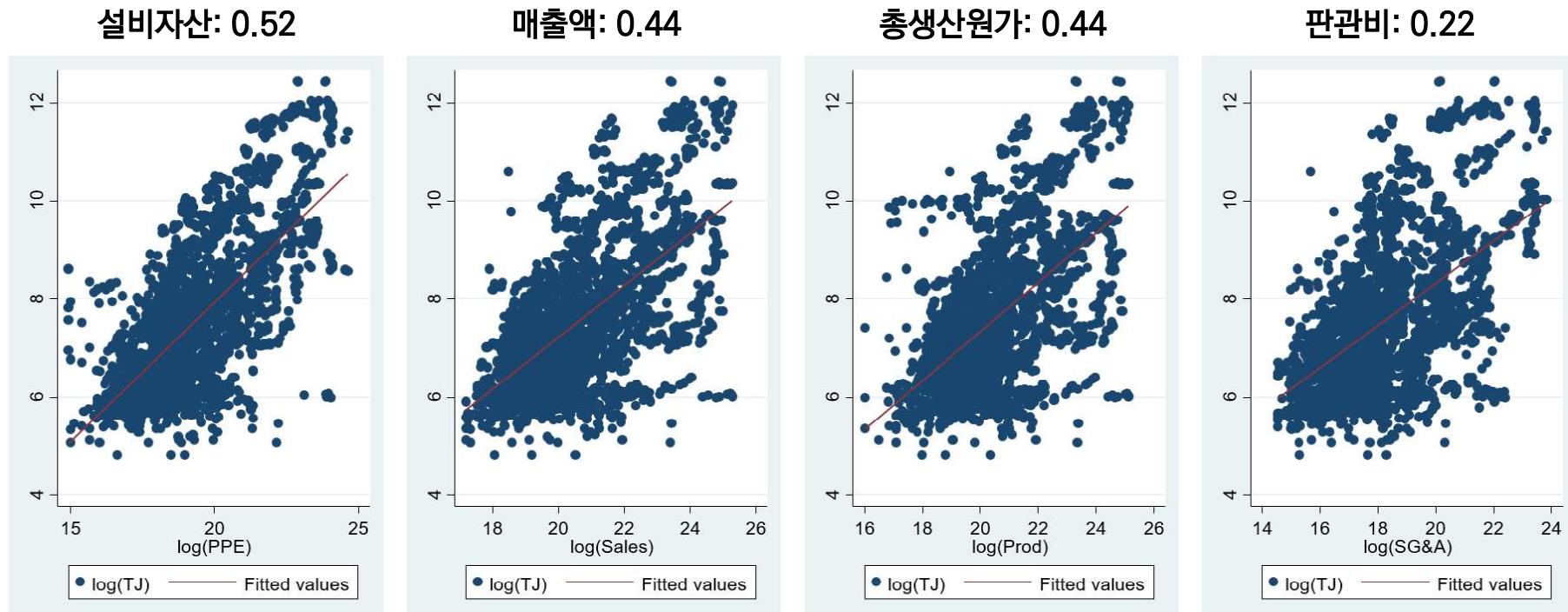
- 설비자산 규모 및 매출 · 생산 · 영업 활동 수준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계
 - '11~'21 기간 2,882 기업-연도, 1% 유의수준(양방향)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설비 규모 · 생산활동 수준과 에너지 사용량

- 설비자산 규모 및 매출 · 생산 · 영업 활동 수준은 에너지 사용량과 (+)관계
 - '11~'21 기간 2,882 기업-연도, 1% 유의수준(양방향)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유예 적용

○ Scope 3 배출량의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 사업장 외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은 데이터 가용성 · 정확성, 추정방법론의 편의가능성 등으로 이행부담 · 편익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 총 4년 간(거래소 공시 2년 + 법정 공시 2년) 유예 후 적용하되, Scope 1 · 2 공시 확대로 데이터 가용성이 개선되는 경우 일정 재검토

자산 규모별 ESG 공시 순차적 의무화 일정(안)

자산 규모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유가증권	2조원 이상	거래소 Scope 1·2	법정	Scope 3										
	1조원 이상		거래소 Scope 1·2	법정	Scope 3									
	5천억원 이상			거래소 Scope 1·2	법정	Scope 3								
	5천억원 미만				거래소 Scope 1·2	법정	Scope 3							
코스닥	5천억원 이상			거래소 Scope 1·2	법정	Scope 3								
	5천억원 미만				자율									

3

공시기준의 일원 · 계층화

공시기준 현황

○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SASB, TCFD 등 다양한 국제 기준들을 선별적으로 활용

- ›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의 수요가 높으나,
- › 우리나라의 특수성, 소규모 기업의 공시 역량을 고려한 공시기준 마련 요구도 지속
 - (일원화)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KSSB 기준을 마련하되,
(계층화) 우리나라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여 공시기준을 계층화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기준 활용도

상장시장	자산 규모	GRI	TCFD	SASB	IR
유가증권	2조원 이상	100%	70%	76%	9%
	1조원 이상	94%	38%	63%	6%
	5000억원 이상	100%	38%	44%	13%
	5000억원 미만	100%	0%	0%	0%
코스닥	5000억원 이상	92%	15%	54%	0%
	5000억원 미만	100%	29%	57%	0%

주 : '21 사업연도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이 3개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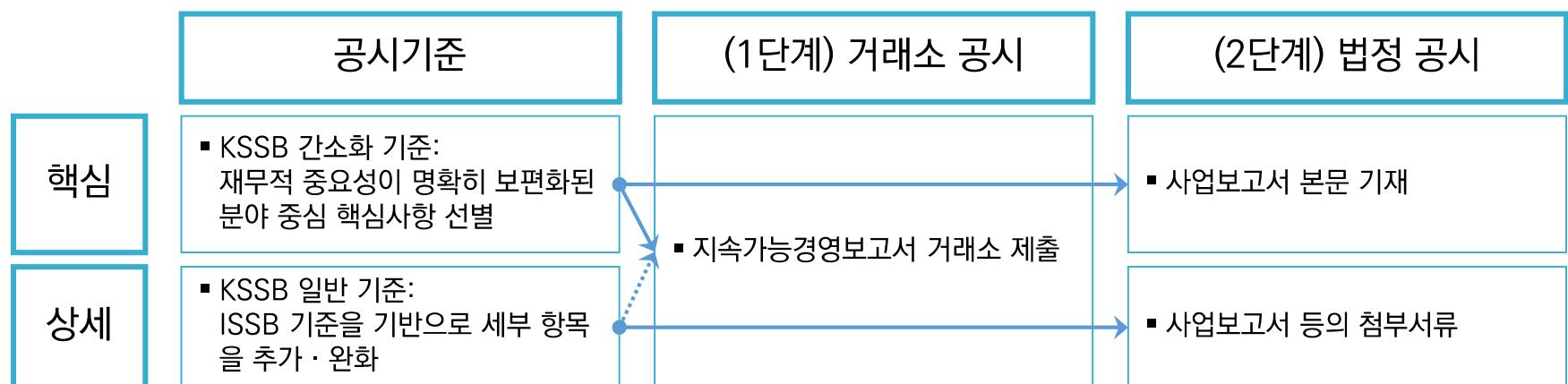
개선: 공시기준의 일원·계층화

○ (거래소 공시) '25 거래소 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간소화 기준을 마련

- › 핵심 의무 공시항목을 선별하여 법정 공시 단계에서의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과 연계
 - (의무) 규제 확대로 재무적 중요성이 보편화된 분야(예: 기후 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 선별
 - (자율)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다양한 국제 기준의 선택을 허용

○ (법정 공시) '27 법정 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일반 기준을 마련

-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추가 및 완화
 - (추가) 국내법상 공시 항목, SASB 산업기반 공시 항목 중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표를 포함
 - (완화) 이행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고려를 통해 ISSB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 혹은 제외



개선: ISSB 기준 도입 관련

○ ISSB 기준을 KSSB 기준으로 전면 도입 · 의무화할지 여부

- › (1안) EU, 美, 日 등 해외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ISSB 기준을 충실히 수용하는 경우,
KSSB 기준에 따른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 (2안) 자본시장의 국제 신인도 ·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사 의무화
 - ①자산 \geq 10조원 또는 ②자산 \geq 2조원&외국인지분율 \geq 30%
(‘21년 106社,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기업과 동일)

4

공시시기의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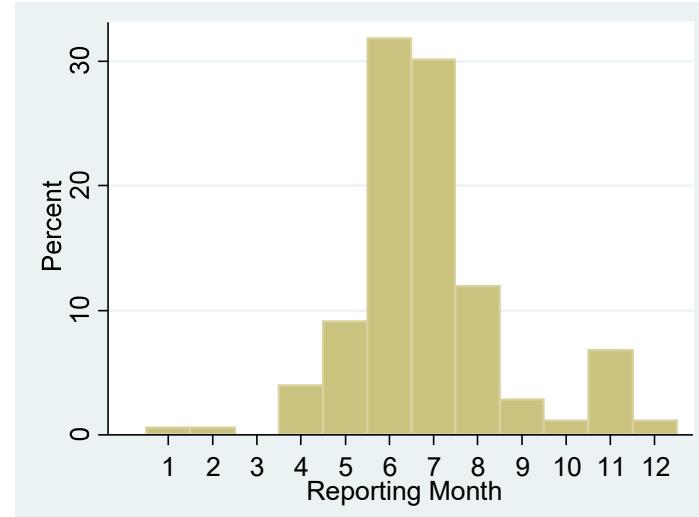
공시시기 현황

○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 대부분은 매년 6~8월에 공시

- › '22년 중 '21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176社의 73.9% 6~8월 공시
- › 공시시차의 발생 원인
 - 재무제표 수치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표(예: Scope 3 배출량 추정) 존재
 - 환경정보공개제도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출기한이 6월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균 공시시기 및 월별 비율

상장시장	자산 규모	평균 월
유가증권	2조원 이상	6.65
	1조원 이상	7.21
	5000억원 이상	6.50
	5000억원 미만	10.33
코스닥	5000억원 이상	7.31
	5000억원 미만	8.29



주 : '21 사업연도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이 3개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개선: 반기보고서 제출과의 연동

- 익년 반기보고서 제출일과 연동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시기의 명확화

- › (거래소 공시) 8월 중 직전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5개월 이내 제출
- › (법정 공시) 반기보고서 제출일(통상 8/15)까지 직전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
 - 반기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제출

- ISSB 잠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의 보고 기간 · 시기의 일치를 요구

- › 지속가능성 정보의 수집가능성 · 신뢰성 · 이행부담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예가 필요
- › 제도의 충분한 안착 이후 보고시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

5

제3자 인증 의무화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인증 현황

- 소규모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음
 - › 해외 주요국 대비 회계법인 인증 비중이 낮은 특성
 - › 지속가능경영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증이 필요 ([Gipper et al. 2022](#))

자산 규모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3자 인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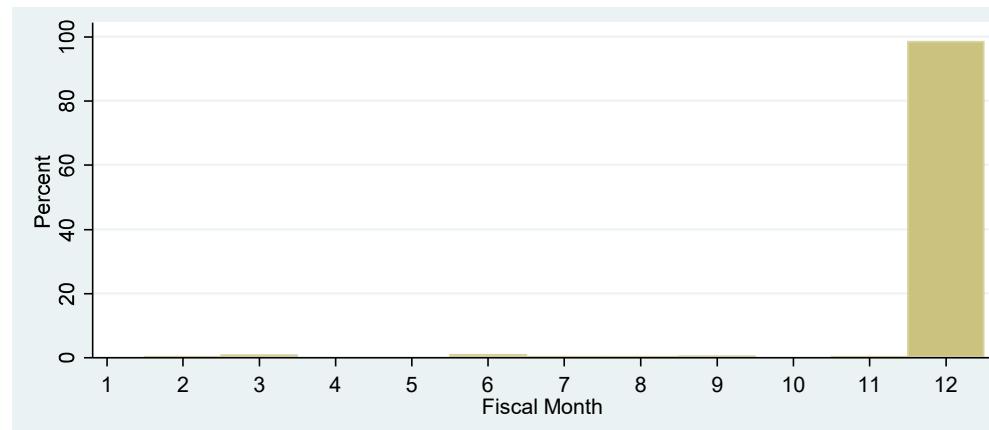
상장시장	자산 규모	인증 여부	ISAE3000	AA1000AS	회계법인
유가증권	2조원 이상	98%	9%	84%	7%
	1조원 이상	81%	13%	56%	13%
	5000억원 이상	94%	0%	75%	0%
	5000억원 미만	50%	0%	25%	0%
코스닥	5000억원 이상	92%	0%	77%	0%
	5000억원 미만	100%	14%	86%	14%

주 : '21 사업연도 12월말 결산 비금융업종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기간이 3개년 이상인 경우 제외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인증 의무화 검토 시 고려사항

- 기업 결산월 분포상 급격한 인증 의무화 시 품질 저하 및 보수 상승의 부작용 예상
 - ›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이 12월말 결산법인(98.3%)이므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 업무도 4~6월 중 쓸림 현상이 예상
 - › 인증인력의 비탄력적 공급 대비 인증수요가 급증하면, 수급요인에 의한 보수 상승, 인증품질의 감소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행위규율 등에 관한 관리 · 감독체계를 확립할 필요
 - › 인증인의 전문성 · 공정성 · 이해상충 등에 대한 문제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

사업보고서 결산월 분포



자료: Dataguide, 자본시장연구원

개선: 인증 의무화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

- 순차적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제3자 인증을 의무화

- › (인증수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수준으로 인증 의무를 부과
 -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의 상향은 추후 검토

- 인증인의 전문성 · 투명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확립

- › (거래소 공시) 인증인의 자격 · 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규범 마련
 - › (법정 공시) 진입 · 행위 규제의 법제화

6

기타사항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정보 공시 검토

○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비중에 대한 공시 필요성 검토

- › 녹색채권 상장 및 녹색여신 규모 분석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중인 녹색분류체계를 기업 공시에 확대 적용하여 기업의 **녹색 투자 · 매출 · 비용지출** 등의 정보를 제공
 - (예) 자본지출, 매출액, 운영비용 등에서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비중을 공시
 -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개 환경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경제활동
(환경기술산업법 §10의4②1.)
-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확대와 함께 기회주의적인 녹색위장행위가 만연하는 경우 관련 공시체계를 정비할 필요성
 - EU의 경우 EU Taxonomy 도입('20) 후 기업 Taxonomy 공시를 의무화('22)

중복 공시부담의 완화

○ 국내 법령상 ESG 관련 공시의무를 거래소 공시 및 법정 공시 체계로 연계 · 통합

- › 정기보고서 · 거래소 공시 규정 · 개별법 · 관계기관 지침 등 중복 요소의 존재
- › 특히, 개별법상 他 부처 정보공개제도의 연계 · 통합이 필요
 - 환경부(환경정보), 고용부(고용형태), 공정위(기업집단현황) 등
유사 · 중복항목의 명칭 일원화, 공시시기의 조정, 의무이행 간주 등





감사합니다

기업의 가치창출과 연계

내부
경영
측면

내부적 원동력

높은 지속성

안정적 외부자금 조달
투자자의 긍정적 평가

외부
관여
측면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의 개선

The World's Leading Capital Markets Think Tank

2023년 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뉴노멀(New Normal) 대응 전략

국내 ESG 공시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사회자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동수 (김 · 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

정지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